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- 1. 납 세 자 : ***
- 2. 부과취소사유 :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
- 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2건	26,521,670	14,041,310	12,480,36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- 2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부과취소내역서 1부.
- 3. 양도소득세 세무서 통보자료 1부.
- 4. 관련법령 1부. 끝

주무관 이지영 지방소득세5팀 표지영 세무2과장 김광수 기획경제국장 09/03 김용운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30157 () 접수 ()
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 전화 02-3423-5753 /전송 02-3423-8818 / zzi0z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